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36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성근, 최서준, 김재홍, 강주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윤, 김혁빈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8,17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17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 위 적 청 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13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 비 적 청 구

주문과 같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원상회복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원고가 판단 순서를 정하여 주장한 것으로 본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E은 망 F(2017. 1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G(2015. 1. 1.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4. 소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대금채권 등(원리금 합계 98,179,135원)을 전전 양수하고, 위 채권양수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2. C을 상대로 "C은 원고에게 23,476,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22826)을 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8. 3. 29. 망인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은 2009. 11. 20.경 소외 K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K는 2009. 11. 2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9. 12.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피고는 2022. 4.경 임차인 K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98,179,135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 무렵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과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망 G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고, 그 기여분을 고려하면 C에게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임차인 K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 이후에 피고가 K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4억 2,500만 원(= ① 토지 2억 1,600만 원 + 이 사건 건물 2억 9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4억 2,500만 원 - 2,000만 원) × 1/3)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98,179,135원)이 위 상속지분의 가액보다 소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98,17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7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별지

## 부 동 산 의 표 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72.8㎡

2.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0.02㎡

2층 69.90㎡

끝.

